



- ▶ COVER STORY:
신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필수요건 AEO! 1
- ▶ FTA News: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2
- ▶ VOICES FROM THE FIELDS:
중남미 지역경제 통합① ..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SHINHAN HOT ISSUE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⑧..... 5
- ▶ WHERE IS GRACE CHANG?:
매일 매일 새로워지다! 6
- ▶ ABOUT WRITERS..... 6

○ 발간호 | ○ 제 18 호 | ○ 2010 년 2 월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안전조치를 수용하면서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과 조화시키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고안한 제도이다. AEO 제도는 세관과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입업체, 관세사, 운송인, 포워드, 창고, 하역업체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관세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 받은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신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필수요건 AEO!

1. 新 무역장벽과 AEO

전 세계적으로 무역 안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발생한 AEO 제도는 新 무역장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기업이나, 각국 세관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3M(화학), Boeing(항공), Bayer(제약)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거래업체와 공급계약시 AEO 공인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계약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은 AEO 공인업체와 비 공인업체간에 검사비용을 약 10 배 정도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은 현지법규, 제도의 이해 및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별 관세행정이나 물류 인프라의 차이로 인하여 민간기업이 컨트롤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AEO 인증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AEO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08 년 AEO 시범 사업을 거쳐 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株), (株)코오롱유화부문 등 9 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며 2009 년 상반기 이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삼성전기, 엘지전자, 삼성 SDI, 두산인프라코어 등 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2010 년 2 월 현재 모두 18 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무역 전문가들은 '2010 년 240 여개 업체가 AEO 인증을 위하여 신청된 상태이며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인증심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3. AEO의 혜택 - 상호인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AEO 인증을 받으면 자국의 여러 통관상의 혜택을 제외하고도 자국에서 받은 AEO 인증으로 상대국 세관의 통관절차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인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MRA 는 아래와 같이 총 4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MRA 가 진행됨에 따라 AEO 업체와 NON-AEO 업체간에 보다 많은 혜택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4. AEO인증을 위한 준비

AEO 공인 기준에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 가지로 분류되며, AEO 공인인증 등급은 재무건전성과 안전관리,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족하고, 법규준수도에 따라 A,

<MRA 구분>

단계	공인기준 상호비교(Side-by-Side Comparison)	대상국	시행 예정일
1 단계	양국이 세무기준을 1:1 방식으로 비교 must, should 등 문구까지 세밀하게 비교	중국, 일본, EU, 뉴질랜드	
2 단계	상호방문합동 실사(Joint Validation Visit) 공인업체를 방문 공인심사 적정성 점검 상대국 현장심사 참관형태로 진행	싱가포르	2010 년 6 월 서명예정
3 단계	상호인정 운영절차논의(Operational Process) 특혜부여, 정보교환 방법 등 추가논의 실질적 혜택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	미국, 캐나다	2010 년 6 월 서명예정
4 단계	최고정책결정자 서명(Signing) AEO 상호인정협정문 작성 상호인정서 서명(세관당국간) 및 발표		

AA, AAA 등급으로 구분된다. 일반 수출입업체가 AEO 제도의 공인인증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절차의 문서화, 문서의 기록, 유지 보관, AEO 교육 및 설명자료 비치, 통관적법성의 원칙과 가격결정 요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등 높은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어 AEO 공인인증을 준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 전사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관세법인을 통하여 컨설팅을 받는 것이 용이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인천공항지사 지사장
 관세사 배 중 한
jhbae@customsservice.co.kr

FTA News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10. 4 월 정식서명 예정)에 대비해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행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한-싱가포르 또는 한-아세안 FTA 와 같은 기관발급체제에서 매건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위한 복잡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한-EU FTA 의 경우 수출건별로 6 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인증수출자의 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장의 인증심사를 완료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오는 4 월부터 시행될 한 EU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와 기존의 인증수출자제도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개념

기존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기관발급방식 하에서 수출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세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구비서류 및 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이다. 반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 자율발급의 요건으로 세관이 수출자의 원산지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업체별 또는 품목별로 인증수출자로 지정하게 되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업체별인증 수출자'는 한-EU FTA 에서 새로이 도입된 개념이다.

□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운용방식

세관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하며,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이 일부 품목에 제한된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한다. 수출자의 원산지증명능력의 판단에는 수출자의 원산지규정 이해수준, 수출물품과 부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원산지·비원산지 재료의 판정 및 가격 산정 정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요건>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대상자	▪수출자	▪업체별 인증수출자 요건에 미충족하는 수출자
인증요건	▪수출자 원산지 판단능력 및 보증 -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판단 능력 -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운영 - 전자회계시스템 및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보유여부 ▪자료보관의무 ▪원산지 검증 서류제공 및 협조의무 ▪법규 준수도 - 최근 2년간 관세법령 미 위반 업체	▪품목별(HS 6단위) 원산지기준 충족 ▪자료보관의무 ▪원산지 검증 서류제공 및 협조의무
인증신청서류	▪인증신청서 ▪주요품목별 원산지소명서 ▪인증요건 충족서류 등	▪인증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인증요건 충족서류 등
인증절차	▪세관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 통보	
인증유효기간	▪최초 업체별 또는 품목별 3년 (연장 가능)	
인증사후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반기 별 보고의무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운용>

구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EU FTA
제도 취지	▪기관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요건 (수출건별 6,000유로 이상 수출자의 경우)
제도 운용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만 제출하면 C/O 기관발급 가능	▪C/O 자율발급 가능
지정 방식	▪품목별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업체에는 인증번호가 부여되며,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수출하는 모든 제품(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품목의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서식 없이 상품송장에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임을 밝히는 서면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할 경우 상품송장에 서명 생략도 가능하다.

□ 한-EU FTA 와 기존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의 비교

한-EU FTA 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필수조건이 되며, 업체별 또는 품목별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는다. 한-EU FTA 에서는 수출건별로 6,000 유로 이하의 물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자율 발급할 수 있지만, 수출건별로 6,000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기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기관발급제 하에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로서, 물품별로만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는다. 따라서 인증물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물품별(모델·규격별)로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EU 수출기업 중 6000 유로이상을 수출하는 업체는 만여개에 달한다고 한다('09 년 말 10,074 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용). EU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의 요건인 원산지 판단능력과 원산지관리 전담 자 지정·운영 및 전자회계시스템 및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보유 등을 통해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한-EU FTA 발효와 함께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대 규

(dkchoi@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중남미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① 중남미 지역경제통합 현황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수출지향형으로 자리잡은 70년대부터 항시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손꼽아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약 33 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 들 각국의 무역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다른 유럽 등의 지역과는 달리 다수의 지역통합을 위한 공동체가 설립되어 있는 독특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남미지역 역내 및 역외의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수출지향형으로 자리잡은 70년대부터 항시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손꼽아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협정체결 이후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전체 수출의 7~8%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외경제에 취약한 중남미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복이 다소 있는 편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칠레 이후 멕시코, 콜롬비아 및 페루와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공동체로서는 MERCOSUR (남미공동 시장)과 FTA를 준비·검토 중에 있는 등 중남미와의 경제교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중남미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약 33 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 이 들 각국의 무역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다른 유럽 등의 지역과는 달리 다수의 지역통합을 위한 공동체가 설립되어 있는 독특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남미지역 역내 및 역외의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통합의 시도는 19세기 초 중남미 독립전쟁의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가 하나의 뿌리, 단일 언어, 공통적인 관습 및 단일 종교의 특성을 가진 지역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회의 개최 등의 시도를 하였으나 큰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그 후 1860년대에 중남미지역을 새로 시장의 개척 및 원자재 발굴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던 영국이 쇠퇴하고,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내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던 중 "라틴

아메리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는 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범 미주의(Panamericanist)와 자주권을 강조하는 라틴아메리카주의(Latinamericanist)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중남미를 포함하는 미주기구(OAS)가 창설되고, 6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이 조직된 이후 많은 지역통합을 위한 공동체 구성에 노력하여 현재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공동체(ANCOM), 중미공동시장(CACM), 카리브 공동체(CARICOM), PPP(파나마 계획) 등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남미 지역에는 다수의 공동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목표인 통합과정의 부진함과 이로 인한 개방적인 세계경제무대에서의 뒤처짐을 우려한 중남미 역내 국가들이 국가 대 국가, 공동체 대 국가, 공동체 대 공동체 등의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양자간 및 소 지역간의 무역협정을 협상·체결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공동체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통합 공동체들이 통합과정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각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째는 지역의 핵심국가들이 겪고 있는 거시경제정책 조정의 부재(예: 외환정책 등) 또는 불균형이 회원국의 수출 등의 경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 회원국간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역내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원자재, 농산물 및



광물에 대한 국제적 수요 및 가격상승으로 역내보다는 역외수출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회원국간의 제도적 장치의 부재 및 법규의 상호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약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중남미 경제를 포괄적으로 불안정성, 즉흥성, 비효율성 및 복잡성 등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위의 공동체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인 틀에서 바라보고 평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우리가 중남미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역의 사회 및 조직 문화이다. 중남미는 오랜 유럽 식민지 시대를 거쳐 독립하였기 문화적인 측면에서 외형적으로는 유럽문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유럽문화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 기묘한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 형태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그 들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이해하며 서두르지 않아야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3월 호에는 중남미지역의 "②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계장 오 병 열

(obyjy@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수입신고 취하 규정 강화

이번에 입법 예고된 AEO(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 시행과 수입업자의 법규준수도에 따른 심사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강화된 수입신고 취하 규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예고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 부여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취하의 강화된 내용, 일괄통관 심사제도의 도입, 기타 소액면세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명확화, 특정물품의 통관지 세관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수입신고 취하 규정 강화

현행 수입신고의 취하 사유는 세관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에는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 배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수입신고 취하를 방지하여, 세관 행정의 원활화 및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앞으로 수입신고를 취하 하는 경우 신고취하서를 접수 받은 세관 공무원이 관세청에 공문을 보내고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취하에 따른 통관 지연과 오류 점수 모두 감안해야 한다. 수입신고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세관 행정의 기초가 담긴 이번 강화 규정을 유념하여 수입신고 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 기타 규정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수입업자의 법규 준수도에 따라서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괄통관심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아그라, 근육강화제, 태반주사제 등 오남용 우려 가능성이 큰 의약품의 경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총 6 병(병당 50 정 기준, 총 300 정 이하) 까지 만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도록 규제하였다. 또한 귀석과 반귀석, 고철, 중고자동차에 이어 활어(관상용 및 양식용 제외)의 통관지를 일부 세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세관이란 부산, 인천, 인천공항, 속초, 통영 등 13 개 세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지난 1 월 25 일에 관세법 제 74 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따라서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한 변경 세번이 고시되었다. 이번에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은 부호기(Encoder) 등과 여성용 방한 다운자켓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

- ① 부호기(Encoder)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부호화(encoding)하는 물품
 - ② 다중화기(Multiplexer)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다중화(multiplexing)하는 물품
 - ③ 변조기(Modulator) :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변조(modulation)하는 물품
- 상기 물품들은 변경 전에 제 8525.50(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되어 8%의 기본 세율을 적용 받았으나, 텔레비전 송신신호를 변환 처리하는 물품은 텔레비전 송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반영하여 제 8517.62 호로 세번이 변경되었으며 0%의 WTO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방한 다운자켓의 경우 변경 전 세번은 제 6202.93-1000 호였으나, 2009 년 제 1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직물로 만든 의류가 분류되는 제 6202.93-1000 호로 세번이 변경되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 유 진

(yseo@customsservice.co.kr)

Shinhan Hot Issue

신한관세법인, 에과도르 관세청에 유니패스 시연



신한관세법인은 18 일 오후 에과도르 관세청장 일행을 맞아 우리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직접 시연했다.

이번 시연은 에과도르에 유니패스를 수출한 우리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이 한국을 방문한 에과도르 관세당국자들에게 직접 시스템 사용현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신한관세법인을 추천하면서 마련됐다.

장승희 신한관세법인 대표는 "관세청에서 직접 우리 법인을 지정해서 전자통관시스템의 시연을 부탁해 왔다"며 "에과도르 관세당국자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 일 에과도르 관세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20 억 원(1600 만불) 규모의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세일보

기자 이 상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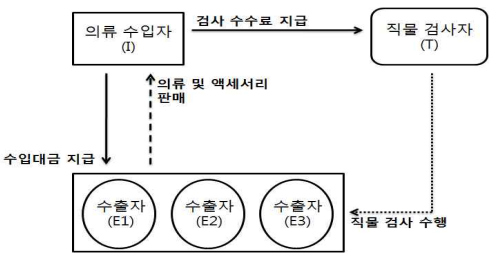
(lsw@joseilbo.com)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직물 검사 수수료의 실제지급가격 해당 여부 (HQ W563480, 2006,06,09)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정하고 있다. (b)(1) 또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b)(4)

라. Ruling HQ547033
1) 의류 구매자는 해외에서 독립된 제 3 자를 직물 컨설턴트로 고용함
2) 컨설턴트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를 수행하며, 구매자는 직물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직접 지급함
3) 구매자가 독립된 제 3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진정한 의미의 구매수수료이면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지 않음
4) 다만 정밀검사, 컨설팅 관련한 서비스 비용이 구매수수료인지 여부에 관해 논쟁 이 있으며, 디자인 및 연구 개발과 관련한 품질관리는 생산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해당 수수료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됨

□ 거래사실(Facts)

1. I 는 다양한 국가의 다수 수출자 (E1, E2, E3)로부터 의류와 액세서리를 수입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소매상임
2. I 는 수입물품의 생산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생산 이전 단계에서 직물 검사를 함
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제 3 자인 T 는 E 가 직물을 구입하기 이전에 직물 검사함
나. I 는 검사를 거친 직물을 E 가 구매하거나 생산에 사용하였는지 와 무관하게 검사 비용을 T 에게 지급함
3. 수입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매대리계약 관계에 있는 구매대리인이 직물 공급 및 검사 관리를 맡고 있음
4. I 는 검사 시점에 직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E 에게 직물을 생산 지원하지 않음

□ 쟁점(Issue)

I 가 T 에게 지급하는 검사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 해당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19 U.S.C) §1401a 규정의 거래가격방법이다. 동 규정은 거래가격에 대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생산지원을 포함한 법정 가산금액을 더한 것으로

2. 관련 예규
가. Ruling HQ542178
생산자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 비용이 상업송장에서 물품금액과 별개로 구분되어 표시되었더라도 검사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함
나. Ruling HQ545753
1) 최종구매자는 용접 및 환승시스템에 결합 될 로봇을 시스템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생산자는 로봇이 시스템에 결합되기 전에 검사를 실행함
2) 인용된 Generra Sportswear Company 대 미합중국 사건(1990)판례에서, 연방순회법원 (CAFC)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성질상 물품 대금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지급은 거래가격을 구성한다고 결정
- 미국 관세청(CBP)은 구매자가 검사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Generra Sportswear Company 대 미합중국 사건 (1990)판례 인용
다. Ruling HQ542946/542774
1) 검사 비용의 과세 여부에 관한 논쟁은 완제품에 대한 검사가 미국으로 선적되기 이전에 행해졌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
2) CBP 는 검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독립된 제 3 자인 경우 검사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3. 쟁점 검토
쟁점 사안과 앞선 Ruling 을 비교한 결과 검사 비용은 수입의류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 I 가 독립된 제 3 자인 T 에게 지급한 검사 수수료는 E 에게 또는 E 의 이익의 위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없음
- 검사수수료는 수입물품의 디자인 및 연구 개발과 관련이 없어 생산지원비용으로도 볼 수 없음

□ 결정(Holding)

검사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볼 수 없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 유 진
yjseo@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매일 매일 새로워지다 _ 日新又日新



장승희
대표 관세사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매일 유사한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에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일과 오늘 일, 오늘 일과 내일 일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며 진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우를 범하게도 됩니다. 이를 피하고 매일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뽀뽀뽀하는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합니다. 독서, 여행, 명상 등등의 대표적인 방법에 더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러한 노력중의 한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한관세법인의 새로운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은 AEO 를 준비하여 실시심사를 마친 것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소속관세사들이 자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본사 및 각 지사에서 실시심사를 받았습니. 준비과정에서 또한 실시심사를 받으며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관세법인으로서는 제일 앞서서 받은 것이기에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낍니다.

2 월 1 일부터는 신한은 새로운 힘이 되어주실 이중운고문을 모셔왔습니다. 관세청에서 근무를 하셨고 現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舊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의 초대사장을 역임하시다 지난 1 월 15 일에 퇴임하셨습니다.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 三顧草廬를 하였습니다. 管에서 또 民에서 쌓으신 높은 경륜은 신한과 신한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고객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이번 호부터는 아직 우리에게 새롭고 낯선 중남미 지역의 경제제도에 대한 기사를 4~5 회 정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추천을 받아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인천공항세관의 오병열계장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한 'AEO 상호인정 협정'과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의 기사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월 18 일에는 예과도로 관세청장과 그 일행이 신한관세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구매하기 이전에 실제 관세법인에서의 활용상황 등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한은 작은 도움이 큰 결실에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설날을 지나 이제는 명실공히 새해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고객 여러분 모두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움을 맛보시는 한 해, 한 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

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

FTA 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



배 중 한 관세사
(ihba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지사 지사장
- 벤처기업협회 관세환급 강사
- 대덕전자, 유한킴벌리 등 자율심사 수행

FTA News-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최 대 규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Voices From The Fields-

중남미 지역경제통합 현황①



오 병 열 계장님
(obyjy@customs.go.kr)

PROFILE

- 現)인천공항세관
- 도미니카공화국 컨설팅
- 칠레관세청 연수
- 스페인 연수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US Rulings 연재②-

직물검사 수수료의
실제지급가격 해당여부



서 유 진 관세사
(yj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AEO T/F Team
- 인천경기지사
- 2008 관세사시험 수석합격